

< 녹 취 전 문 >

과제명	2018년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구술자명	김용준 제2기 헌법재판소 소장		
면담자	이인호	면담장소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
면담일시	2018. 9. 28. 10:00 2018. 11. 21. 15:00	회차	1, 2회차

1. 법관 생활 회고 및 사법 철학

면담자: 이 면담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2018년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과거의 재판 경험과 헌법 철학을 구술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술하실 분은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김용준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2018년 9월 28일 오전 10시,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에 위치한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변호사실입니다. 면담자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먼저 구술에 앞서 오늘 구술의 주인공이신 김용준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준 소장님은 1994년 9월에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취임하셔서 2000년 9월에 퇴임하시기까지 6년 동안 제2기 헌법재판소, 즉 김용준 헌법재판소를 이끄셨습니다. 오늘날 헌법재판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에는 1기 헌법재판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초를 닦았고 제2기, 즉 김용준 헌법재판소가 반석 위에 헌법재판을 올려놓는, 그런 형설(螢雪)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소장님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시기 직전까지 6년의 대법관을 지내셨고 그 전에는 1960년에 판사로 임명되어 28년간 법관으로 봉직하셨습니다. 28년의 판사, 6년의 대법관, 6년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무려 40년을 재판 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실로 한국 사법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술자: 가만있어. 아까 몇 년 판사 했다고?

면담자: 28년 판사 하시고 6년 대법관...

구술자: 아, 맞아. 그렇지, 그렇네.

면담자: 그래서 무려 40년입니다. 먼저 소장님의 퇴임 이후의 근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2000년 9월에 퇴임하시고 지금 무려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구술자: 2000년 9월에 퇴임해서 ‘울촌’이라는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가서 딱 10년 있다가 그만 두고, 여기 법무법인은 대표자가 제 사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 하나 차려 가지고 그냥 후배들 조금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사건은 별로 오지도 않고, 그렇고 그러니까 벌써 18년이 더 지났네. 2000년이니깐 18년이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두 번 변했네.

면담자: 소장님께서 판사 34년을 하실 때 그 시기가 상당히 격동의 시기거든요. 정치적으로는요.

구술자: 격동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혁명이란 것은 다 거쳤으니까. 사법관 시보 할 때 4.19 나서 4.19 나던 해에 유월 달에 판사를 했으니. 4.19 거쳤지, 5.16 거쳤지, 거기다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는데 그게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때예요). 1980년 6월 1일자로 내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있다가 대법관이 되었는데 역시 대법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도 중요하지만 대법관이 진짜 중요한 거야. 대법관 되었을 때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 이래서 대법원이 필요한가 보다 그런 것은 1심, 2심에서 유죄 받았던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에서 이것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파기 환송할 때가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유죄라 하면 징역 산다, 또 공무원은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구나. 그 사람들은 구제해 줘도 나중에 편지 한 번 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은 공무원인데 내가 무죄 (판결)해 줬더니 대법관실로 찾아왔더라고. 고맙다면서 뭘 가져왔어. 저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처가가, 충남도 서천 한산인데 거기 모시가 유명해요. 거기 자기 처갓집에 갔다가 받은 건데 모시인데 이게 별 거 아니니까 자기가 하도 감사해서 가져왔다고. ‘모시만 있냐’ 그러니까 ‘모시만 있다’, ‘그래 좋다’... 받았어. 딴 것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 한 번 받았어. 그때 보람이 있었고 또 대법관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법률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나서 다수 의견 쪽에 (판결을) 할 때는 별 큰 보람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이것은 소신이, 다수 의견 쪽은 틀렸다, 그래서

장문의 소수 의견을 내가 몇 건 쓴 게 있어. 언젠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겠지만 그런 것 보람을 느꼈죠.

면담자: 소장님, 최근의 화두가 여론 재판이거든요. 다른 어떤 압력이라기보다 여론의 동향에 따라 이렇게 재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우리나라 여론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여론 따라가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존중해서도 안 돼.

면담자: 헌법재판 하실 때 여론에 영향을 안 받으셨습니까?

구술자: 여론에 별로 영향을 받은 게 없는 거 같아. 여론이 말이야, 제일 여론이 센 게 동성동본혼 할 때 말이야. 유럽들 버스가 수십 대 와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아니 유럽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하고 사람 죽고 그럴 땐 가만있다가 왜 동성동본혼 할 때는 몇 십, 몇 백 명씩 몰려드느냐 말이야.’ 동성동본혼이라는 게 말이 지. 신라 김해 김씨니, 신라 때부터 동성동본혼인데 그게 결혼하는 게 ‘금수(禽獸)’라고 하면서 수없이 몰려드는 거야. 진짜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었을 때 유럽이 언제 한번 나서서... 옛날에는 있었죠. 이조(조선 시대) 때. 또 대한민국이 국권 침탈당할 때는 유럽들 자살하기도 하고. 요새 유럽들이 동성동본혼 할 때만. 그게 여론이라면 여론이고. 또 뭐 여론이 있었을까. 별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욱먹은 것은 그거야. 체대 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했더니 말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이야. 원망, 욱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인터넷에다가 아주 실명을 대 가지고 이재화 재판관이 김용준 소장한테 속아서, 김용준 소장이 다리가 불편해서 신체장애인들 편을 드는데 이재화가 속아서 찬성을 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체대 군인을 5% 가산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뒷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예요. 옛날에는 시험 커트라인(cut line, 합격선)이 낮았어요. 60점, 70점 그러니까 5점 더 받으면 되었어. 만기 체대자는 60점에서 5% 가산하면 65점인데 신체장애자나 여자라도 65점 받으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커트라인이 80 몇 점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가산점을 안 받으면 거의 90점을 받아야 하니까. 가산점 못 받은 사람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여자하고 신체장애자,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그러면 시험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리고 이게 말

이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7급 이하 공무원하고 교원 채용 시험에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다 줘서 5급도 주고 말아야. 사법시험도 주고 행정고시도 다 주고 해야지.

면담자: 소장님의 사법 철학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술자: 사법 철학은, 너무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그때그때 구체적 타당성도 함께 고려해라, 너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면 법이론이나 논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요시해라, 법논리에만, 형식논리에만 법에 구애되지 말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살아있는 재판이다...

면담자: 살아 있는 재판이다, 예... 최근에...

구술자: 그 다음에 양심 얘기는 재판관 개인으로서의 주관적 양심, 즉 주관적인 가치관, 신념,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객관적인 양심을 가리키는 거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도는 개인적 신조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 의견(백락상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서 이혼 판결도 하고 그래야 한다. 자기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지만 공산주의가 토지나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할 때는 자기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더라도 토지사유제나 이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양심이란 그런 것이지 양심이라고 저 마음대로면 절에 가야지. 거기 가서 머리 깎든지 신부님이 되든지. 목사도 안 돼. 목사를 하려고 하려면 신도들 눈이 있으니까 독신으로 혼자서 신부가 되든지, 비구승이나 비구니가 되든지. 그래서 자기 양심대로 하면 누가 관여해.

면담자: 그러나 재판관이나 법관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술자: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정치적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어야지.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뭐라 그러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 그러는데. 일본 법은 말이지. 법관, 그냥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요. 헌법은 말이지. 일본 헌법은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직권을 행사한다.”

면담자: 아, 헌법에...

구술자 : 헌법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양심을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만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이 된다, 헌법과 법률 이외에는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2. 헌법재판소장 활동 경험

면담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술자: 소장으로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기는 다양성이 있고 2기에는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2기 재판부가 구성이 될 때 처음 참여한 사람은 다섯 사람이고 네 분이 1기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넘어온 게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그 중에 법관 출신이 많지만. 넘어왔기 때문에 순수한 법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어렵단 말이야. 네 사람이 그렇고 나머지 신참인 다섯 사람 중에 판사는 나하고 고중석이고 두 사람은 검사고 한 사람은 조승형이라고 검사를 하고 정치인 출신이니까 2기가 꼭 다양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법재판소 오니까 처음에 회의를 하고 평의(評議)를, 대법원은 ‘합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평의’라고 그래. 평의를 하니까 말이야,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조금 뭐라고 할까, 회의가 너무 산만하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이야).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오고. 대법관 회의와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대법관은 전체가, 80, 90%가 전부 직업 법관 출신이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변호사 내지 교수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 아마 초반에는 발언도 조심스럽고 (발언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말도 그때그때 통하고 의견이 달라도, ‘아 그래’ 이해할 만하다 이렇지. 똥똥지같은 이야기는 잘 안 나온다 말이야. 그런데 이건 구성원이 다르니까 어떨 땐 똥똥지같은 소리도 나오고 말이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중구난방이 아닐까. 그런데 내가 6개월 지나면서 이게 중요해. 6개월 지나면서 내가 느낀 게 ‘아, 이게 민주주의구나’,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하나의 결론, 아니면 두 개의 결론으로 압축(해내니까), 이게 민주주의구나, 덮어놓고 조용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의견 발표도 자유스럽게 하고 그랬어요. 아까 통계표 있잖아요. 1994년 9월 15일부터 1996년 8월 29일까지 2년 동안에 장기미제사건 처리한 게, 1989년 사건 둘 처리하고 두 건 미제, 1990년 사건을

아홉 건 처리하고 네 건 미제, 1991년 사건을 스물네 건 처리하고 네 건 미제, 1992년 사건을 스물여섯 건 처리하고 열아홉 건 (미제), 이래가지고 장기미제사건을 줄여야겠다... 재판은 말이죠,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재판의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재판이 부실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런 반대론이 있어요.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려고 이대로 내가 1년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꼭 자료로 남습니다, 복사해서 가져가 재판관들한테 돌렸단 말이야. 돌렸더니 어떤 재판관은 말이야, 여기는 대법원하고 달라서 독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독촉해서 당신들이 빨리 하라 그랬냐 이왕 오래되면 욱먹으니까, 그래서 장기미제사건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쪽 이렇게 고무도장을 새겨서 끝난 건 '완(完)'이라고 도장 찍고 수시로 봐 가면서 독촉을 했던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뭘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란 말이야. 기본권 보장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해된 경우에 구제해 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야. 그 다음에 먹고 살게 해 주어야지. 자유만, 다리 밑에 있는 거지 보고 '너 자유다' 그러면 무슨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까? 배가 불러야지. 자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특히 입지전적인 인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약자를 대변한다' 그런데 미국 대법관이 말이야. '빈자에게나 부자에게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빈자의 권리만 보장해도 안 되고 부자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부자는 나라가 보장해 주지 않고 대법관이 보장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장할 힘이 있으니까 빈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지. 나는 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대법관 할 때까지 그랬는데 국민의 가장 밀접한, 국민의 생활, 재산, 이런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내지 침해당하는 것은 난 조세다, 세금이다(고 생각해요). 구속돼서 재판받는 것은 전 국민 중에 몇 %나 됩니까? 세금은 안 내는 사람 없단 말이야. 안 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만 거의가 다 모든 사람이 낸다 말이야.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특히 의회주의가 다 아시다시피 조세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야. 국민들이, 잘은 모르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조세를 결정하는 게 국민들의 대표자가 해야 되겠다, 그게 조세법률주의야. 거기에서 영국의 의회가 시작된 겁니다. 영국의 의회의 시발(始發)이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들의 대표자가 결정하게 하자, 그게 유식한 말로 하면 조세법률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세법률, 법이 말이야, 너무 개괄적이예요. 그리고 조세법률은 말이죠. 사무관, 주사 선에서 만들어

요. 국회에서는 관심없어요.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들 표만 의식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동본혼 이게 안 되는 게 동성동본 혼인 금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조용하고 떠드는 건 유림이란 말이야. 동성동본혼 금지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표가 늘어나는 건 별로 없고 손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없었으면 이걸 영구히 안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관계없어. 유림이 하거나 말거나. 그게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팔촌이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팔촌 이내는 문제가 있어. 팔촌 넘으면 저게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금수니 뭐니 그러는데 팔촌 이내는 결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동성동본혼 말고 근친혼, 팔촌 이내의 혈족하고는 결혼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동본혼 금지하라는 조항이 위헌이 되어도 팔촌 이내에는 못 하는 거야. 불합치를 했지만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결정이 나니까 대법원에서 전국의 호적 관리들한테 동성동본혼을 받아 줘라 이랬으니까. 끝이 난 거지. 불합치건 뭐건 간에. 그게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가능한 게 티피컬한 건 그거야 사실.

면담자: 그 결정은 아주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면담자: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되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관을 바로 마치시고 제2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구술자: 내가 대법관을 7월 7일, 7월 8일 그 언저리에 임명된 날짜가 7월 9일인가? 7월 9일이 주일날인가 그런데 7월 7, 8일... 내가 대법관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바깥에서 친구들과하고 밥 먹고 술도 마시는 그러는 날 이외에는 주일날이고 뭐, 매일 새벽 한 네 시에 일어나 가지고 말이지 일곱 시까지 기록 보고 판결 쓰고 했는데 이제 해방이다, 더할 것도 없고 끝이니깐 인제 좀 쉬어야겠다, 여행이나 좀 하고... 내가 여행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깐 여행하는 것에 대해 무의식중에 동경 비슷한... 내가 하여튼 여행한 나라가 가서 한 번이라도 땅 밟고 하루라도 잔 나라가 80개국 돼. 웬만한 외교관보다 더 많아. 여행이나 해야겠다 그러는데 자꾸 변호사하라고 그래. 대법관 끝나고 나서 그때 변호사 했으면 몇 년 동안 돈 수십 억 벌었을 거야. 아 뭐, 변호사 하라고 그래서 친구하고 두 내외가 갔어. 갔다가 그때 덴마크(를 포함하여), 북구 4국 갔어요. 그게 1994년이지.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니깐 우리 아들이 공항에 나

와 가지고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공교롭게 내일 대통령이 점심 먹자 그런다 해서 귀국하시면 자기네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다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법관들 불러서 수고했다고 밥이나...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나하고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면담자: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하고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구술자: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지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좋게 생각해. 그래서 김석우 (의전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지. 저녁 무렵이야. 그랬더니 내일 점심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열두 시 5분 전까지 오라 그러더라고. 나 혼자 만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열두 시 한 10분 전쯤 가서 기다리다가 열두 시 5분 전쯤 올라갔지.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실이란 게 있는데 거기는 비서실장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손님들 오면 응접실 비슷하게 이용을 하는 거야. 거기 가 있다가 열두 시 되니까 안내하더라고. 안내받아 들어갔더니 이른바 독대야. 이만한 테이블에 말이야, 의자가 둘 있더라고. 왜 그러냐 (생각하며) 앉았어. 이 양반은 말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때는 청력이 그렇게 시원찮아지기 전인데 잘 안 들리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야당 생활을 오래 해 가지고 항상 도청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 말을 조용, 조용, 조용... 크게 안 해요.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지. 요지가 뭐냐 하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김 대법관을 지금까지 했던 일하고 비슷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로 발설하면 끝나는 거니까 공표할 때까지 비밀을 지켜라 그래. 한 한 달쯤 지났나, 한 20일 지났나. 어디 기록이 있을 텐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지. 내일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저희는 대통령이니깐 금방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대법관 할 때 서류가 다 있으니까... 재산 신고한 서류 다 있으니까.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때는 이제 공표 해도되는 거지. 공표 안 했지만 다 알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얘기했냐면 그때일 거야. 헌법재판소장을 제가 하게 되면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심지어 평통(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까지 다 장관급인데 헌법재판소만 사무처장이 차관급이다, 이게 대외적으로 체통이 안 서니깐 장관급으로 승진(하는), 법률 개정 작업이다 말이야. 아 그러라고. 그때 박희태가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야. '박희태한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면 빠치지 않을까(생각하여) 내가 얘기하려 하니까 아,

가만있으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사무처장은 내가 이런 사람을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쪽쪽 소개를 했지. 소개를 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별 흠이 없으면 이 사람 시켰으면 좋겠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소장이나 재판관은 6년 임기 채우고 나면 떠난다, 주인이 아니다, 남의 식구다, 6년 뒤에 떠나니깐 사무처장 하던 사람은 밖에서 올 수도 있고 밑에서 승진할 수도 있는데 사무처장 하던 사람을 다음에 재판관에 대통령 임명 케이스 재판관이 비면은 사무처장을 좀 재판관으로 지명해 달라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알아보고 자시고 아 그러라고...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얘기했지. 이영모가 경상남도 의령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서울고등법원장까지 했는데 사무처장으로 격이 안 맞는데 내가 교섭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그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십시오. 아, 뭐 법은 금방 고치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건 후일담이야. 그래서 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인연은 전혀 없는 게 지금도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강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법원 쪽의 의견을 들었을 거야. 법원 쪽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재판 제대로 하고 괜찮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자화자찬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게 그게 장점이 됐을지 몰라. 이런 사람을 시켜서 장애인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쓴다, 나는 꼭 내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운동할 무렵에 장애인 올림픽에 나갈 선수단이 합숙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후보자 되고 그 무렵인데 소아마비협회에 온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대법관 때지. 오면 오나 보다 했더니 선거운동본부에서 김 대법관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거기 이사와 우리 협회에 대통령 후보자가 온다고 그러는데 나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나 마찬가지로 가자 해서 만났지. 나는 그때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 나는 뒤편에서 서서 (있었지). 아,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김 대법관 이리 오라고 같이 태우고, 볼 때마다 자꾸 이리 오라고 그래. 나는 그때 이 사람이 좀 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만난 일이 없어. 왜냐 하면 야당 국회의원 했는데 만나서 뭐 덕 볼 일이 (있나). 지금도 내가 대법관까지 한 거는 아무 덕 본 게 없는데 헌법재판소장 한 거는 그 양반이 한 격을 격상시켜 줘서 항상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해. 말이 나왔으니까 대법관도 나는 될까 말까 했는데 그게 운이예요. 사람이 일정한 단계까지는 노력으로 되는데 그 다음은 운이야.

면담자: 소장님께서 그동안 쌓아 놓으신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거죠).

구술자: 쌓아 놓은 게 뭐가 있나요? 나는 쌓아 놓은 것이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나는 말이

지. 나는 부러웠던 마인드가 있어. 대법관할 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장 할 때도 제일 아주 초년생 변호사 오면 다 만나 줘. 왜 못 만나? 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대법원장이 판사실에 출입을 금지해서 2층에는 못 올라가게 하고. 아니, 뭐 개돼지야. 2층에 못 올라가, 바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2층엔 못 올라가게 하고. 아니, 누가 나쁜 짓 하려면 바깥에서 속닥거리며 나쁜 짓 하지, 누가 사무실에서 속닥거리며 나쁜 짓 해. 나는 다 만났어. 나는 다 얘기 듣고 ‘그러냐?’ 대답할 수 있는 거 대답하고 대답할 수 없으면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없다, 당신 얘기는 지금 충분히 듣고 알았다, 고려하겠다’고 해요.

면담자: 소장님, 소장으로 임명되시고 2기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1기 재판부와 2기 재판부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술자: 차이는 별로 없고요. 나는 1기 재판부의 업적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미진한 것 있으면 보충하고 그랬지.

면담자: 소장님이 임명되시고 그래도 역점을 두고 재판 하시는...

구술자: 그래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는 거였죠. 사건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졸속 내지 신중을 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재판이 외국에 비해서 빨리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변혁을 거치는 동안에 국민은 자꾸 빨리 해라,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데, 너무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또 하나 왜 우리나라 재판은 빨리 했냐면 그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인플레가 심하니까 재판에서 10년 끝다가 돈 달라 하는 건 이겨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10년 전의 1억이 말이야 10년 재판 끝다 받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 사람이 재판한다는 게 완전무결할 수 없는데 빨리 끝내야 한다, 빨리 끝내자였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제일 가장 많은 게 세금 사건이라고. 그리고 세금 사건은, 세법은 재무부 세제국의 주사 내지 사무관 선에서 만들고 국회에서는 바로 검토도 안 하고 넘어가고. 법원에서는 세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러니까 옳다, 옳다 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세법에서 엉터리로 만들어. 또 모자라는 거는 국고주의 입장에서 나라가 유리하게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또 안 되면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고. 그러니 대법원 판결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깐 옳다(는 식이야). 재판에는 법까지만 따져야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법원도 그래.

시행령, 시행 규칙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법이 잘됐나 안됐나,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따져야지,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르다? 그건 틀린 거란 말이야. 법원에서, 아니 헌법재판소에도 세법을 국민이 유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고 아닌 거는 위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초세는 1기 때 했고 우리 때 택지 상한에 관한 법률 했잖아, 내가, 야, 왜 선량한 사람 별 것도 없이 택지 200평 가진 사람만 가지고 시비하나, 필요없는 공장 수십만 평 가진 사람, 가게 수만 평 가진 사람은 가만 놔 두면서 택지라고 200평 가진 사람, 너희들 괜히 잘난 체하고 부자 뭐 하는데, 왜 졸부 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부자들은 따로 있단 말이야. 지금 재벌들이 어떻게 대물림된 줄 아냐? 재벌들이 다 공장 짓는다고 땅, 수십 배 땅 차지해 가지고 거기다 공장 한 구석에 짓고 부동산 장사해 가지고, 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택지만 가지고 200평,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랬더니 헌법재판소는 있는 사람 편만 든다고 나는 그게 아냐, 빈자에게나 부자에게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해 주자 이거야. 부자에게도 권리를 보호해 줘야지

면담자: 법 앞에 평등은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구술자: 그래서 세법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조사를 하다 못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명의 신탁이란 게 항상 문제란 말이야. 예를 들면 부동산을 내 아들 이름으로 등기한다 말이야. 증여세 회피하려고. 그리고 뭐라 하나면 이거를 증여하려는 게 아니고 잠깐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이런단 말이야. 언제든지 돌려놓을 거다, 가만있으면 안 돌려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증여로 보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1년이든가 1년 이내에 환원을 하면 세금을 안 물려. 그 다음에 1년 지나 환원을 안 하면 말이죠. 그거 참 엉터리 법이에요. 두 번 증여세를 물리는 거야. 한 번 줄 때 물리고, 1년 지나서 이쪽 또 물리고. 돌아보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데 증여세만 두 번 물리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1년인가 된 것을 세법을 6개월로 고쳤어요. 6개월 이내에 회복하면 되고 6개월 지나면 안 된다, 그것 위헌이다, 지난번에 1년이라 하고 잘하다가 지금 6개월인데 말이야, 이거 합헌이다, 이 다음에 한 달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니 재판관들이 세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지 나 혼자 소수의견 썼나? 내가 그것 위헌이다, 찾아봐야 해요. 이번에 못 찾아봤어. 세법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판 재판관들보다 내가 많이 주장했어.

면담자: 소장님, 당시 재판 업무나 사법 행정 관련해서 헌법연구관이나 연구부장 시스템이

재판관님들을 보조하는 기구인데요.

구술자: 연구관이라면 내가 기억나는 게 연구원이 있었던 말이야. 연구원이었지. 그런데 연구원 채용하는 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지. 연구원도 시험 봐라 이랬던 말이야. 보니까 연구원이 엉터리가 있겠더라고. 시험 봐라, 그래서. 그 대신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은 연구관보로 발령을 낸다, 떨어지면 계약 기간 끝나면 끝이다, 그것은 메리트(merit)를 준 거란 말이야. 그때는 연구관보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연구원이면 계속해서 연구원이지. 그래서 자체 연구관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확보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했어요.

면담자: 소장님, 사법행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장 공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구술자: 헌법재판소 부지는 창덕여고가 나가면서 처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헌법재판소가 나눠 쓰기로 했는데 변정일 사무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회창 대법관을 만나서 양보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좋다고 가져가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급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다 지었어요. 조금 좁은데 그래도 그만한 땅이 어디 없잖아. 그만한 데가 없지. 경기고등학교 자리가 더 좋았는데. 더 높지. 공관은 그게 대통령 안가(安家, 특수 정보 기관 따위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일반 집)였어요. 간단히 얘기할게. 그게 민비의 직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민씨가 가진 개인 저택이었는데 어떻게 경과를 밟아서 군사 정부에서 그것을 샀어요. 산 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름은 무슨무슨 부대 그랬던가? 그래서 그것을 사서 국가 이름으로 등기를 남겼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안가로 썼다고. 두 번, 노태우 대통령까지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업적인데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안가 없앤 것, 앞의 두 개는 정말 어려운 걸 한 거야. 그리고 안가도 잘 없었지. 안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 김영삼 대통령이 안가 없앤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건물은 댔고 공관을 물색 중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탐을 내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관용이란 사람인데 내가 조금 아는데 브로드 마인드(broad mind)야. 생각이 넓고. 지금도 통일 문제 이런 것 하는데. 생각이 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댔어.

면담자: 공관 사용에 동의...

구술자: 김영삼 대통령도 보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야. 좋다고 했어. 공관을 차지해서 (전임 소

장이) 한 1년 살다가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아, 들어가는데 2층에 침실이 있는데 2층 목욕탕에는 녹물만 나오고 말이지. 세수하는 세면대도 겨우 세수나 할까 말까, 2층 마루에는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물을 고치려니까 수도 파이프를 전부 갈아야 한다는 거야. 몇 억이 든대.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6년 살면 되는데 전임 소장이 안 고친 것을 내가 돈 들어서 뭘 고치냐, 할 필요 없다, 그냥 산다고 했어.

면담자: 소장님, 2기 재판부 때 평의하는 모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술자: 평의? 평의는 대법원부터서 그랬는데. 주심 대법관이 설명을 하죠. 사안은 이러고 이런 건데 쟁점은 뭐다, 여기서 우리 의견 교환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일이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서열 낮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의견을 내요. 소장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별 얘기 없는 사람은 주심 재판관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면 한 사건의 80%는 그냥 주심 재판관 의견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지. 이견이 있으면...

면담자: 그럴 때 공방이 펼쳐질 게 아니겠습니까?

구술자: 상당히 공방이 펼쳐지는 수도 있었어요. 티피컬한 게 이영모 재판관이 임명되면서부터 더 심해졌어. 이영모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자꾸 주장해서. 그게 좋아요. 내가 처음에는 자꾸 시끄럽고 이러냐 말이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가. 지금도 그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

면담자: 소장님, 평의실 안에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구술자: 아무도 못 들어오지.

면담자: 연구관도 못 들어갑니까.

구술자: 연구관도 못 들어오지.

면담자: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때...

구술자: 들어오면 얘기하다가 딱 스톱하지. 스톱했다가 나간 다음에 얘기하고.

면담자: 거기서는 메모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구술자: 물론 메모는 다 하지. 적어달라고도 하고. 내가 지금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적어달라는 거지. 소수 의견 쓸 것 같은 때는 그냥 발표 나가면 곤란하니까 소수 의견 써서 초고 돌리라고 해요.

면담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주심제도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자: 주심제도는요. 원래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주심 표시가 없었어요. 내가 대법관 한 게 1988년이니까 1990년도인가, 이회창 선배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주장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했어. 그래서 이회창 선배한테 내가 이번에 한 번 주장을 하겠다, 그래서 주심을 정하자고 했어요. 주심이란 게 판결에다가 판사가 누구라고 쓰자는 거야. 주심을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판결문은 주심판사가 쓰니까 이 판결문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야. 물론 서명한 사람과 공동 책임이지만 특히 쓴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거지. 그 주심제도를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주옥 하다가 언제부터가 흐지부지 없어졌다. 원장이 왜 없었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실례지만 책임지기 싫은 사람이 없애자 그러는 거야. 그거 없애자 그러니까 원장이 '그래, 없애자' 그랬대. 헌법재판소 와서 내가 주심 표시하자고 했다고. 딴 사람이 지지해서 표시를 했어요. 주심 표시를 해야 해. 미국은요. 판결에 합의가 되면 판결문을 누가 쓰느냐 하는가 하면 원장이 지명을 해요. 이 판결은 누가 써라. 지명하니까 원장한테 딱히 실력이 없다고 평가받으면 좋은 사건을 안 주는 거야.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자기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실력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니까 점점 더 실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쓰고 우리나라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이인호 재판관이 의견이 이렇다, 그리고 집필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사람은 김용준, 누구누구는 여기에 동조했다, 그리고 같은 결론이라도 누구는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다 각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동조한다, 킨커(cuncur)라고 그러냐? 동조한다 그러지 누구 의견은 같다, 이렇게는 안 해. 쓴 사람이 나오는 거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지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내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생각을 가니까, 문서가 있는데 연필로 막 고친 게 있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약인데 설명한 사람이 제대로 알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동창이 설명을 하는데 미국

에서는 그런 중요한 외교 문서는 초안 잡은 데서부터 나중에 대통령이 결재할 때까지 그게 그대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필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고쳤는지도 알려진대. 나중에 말썽이 나면 누가 이거 고쳐서 말썽이 났다 이렇게도 되는 거야. 나중에 오리발 못 내밀게 말아야. 그래서 트루먼, 아니 루스벨트가 고친 거다, 대통령이 법률가니까 고친 거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심 표시 안 하죠?

면담자: 안 합니다. 저희들도 결정문을 받았을 때 주심 표시가 있었을 때는 아, 이 분이 쓰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썼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술자: 그거 보고 조금 신뢰감이 가고 덜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면담자: 네, 차이가 나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재판관의 철학이나 사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구술자: 맞아, 학자들 입장에는 더군다나 그렇지. 또?

3. 2기 재판부의 쟁점 사건들

면담자: 당시에 2기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구술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건 뭐, 권한쟁의 가지고 밤낮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헌법학자들 얘기지 권한쟁의 해 봐야 고쳐지지도 않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슈, 5.18특별법이죠. 내가 소장으로 가니까 불기소처분부터 말썽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것도 한 번 불기소한 것, 기소유예한 것 말이지. 옳으나 그르냐 하는데 그때 기소유예 했는데 어떻게 기소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것 가지고 별로 욕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다고. 그 다음에 또 탄 쪽에서 고소하니까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사 오고 그랬지. 유럽 가서 프랑스혁명 (조사 연구했어요).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책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 책도 많이 사고. 성공한 내란 처벌할 수 있냐, 없냐.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란이 성공한 채로 쭉욱 계속이 되면 처벌하려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처벌을 못 해. 어쩔 수 없지만.

끝나면 내란이라고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냥 덮어줬다고 그냥 덮여둔다면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 아니냐,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자. 이랬는데 이것은 누구라고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는데 연구부장인지 어떤지 연구관실에 초고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고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방송국 기자가, 누군지까지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 삼으려고 그러다가 문제 삼으면 또 왜 그걸 보판을 잘못했니, 뭐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자 그랬는데. 그것을 잠깐 점심 먹으러 가는 기회에 어느 사람이 잠깐 복사를 한 거지. 잠깐 복사를 할 수 있잖아. 연구관실에 쓰옥 들어가면서 아무도 없거나 여자 타이피스트(typist, 타자수)가 있으면 내가 좀 본다, 우물우물하고. 복사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게 최종 초고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판결할 때 가서 고쳐졌단 말이야.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고쳐졌어.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어느 부분이 고쳐졌는데 그 고쳐진 부분이 초고 때 있던 부분이 그냥 남아 있단 말이야.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고 초고 때 어느 사람이 가져간 거다 이거야. 그게 결정이 났다고 보고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고쳐졌단 말이야. 이걸 틀림없이 초고 때 어느 방송국 기자라 그랬어. 방송국 (간부들) 만난 길에, 당신들 너무 떠들지 말라고, 당신들 아무개 기자가 훔쳐간 거라고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더라고. 웃기만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말예요.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불신풃조 때문에 그렇지. 왜 평의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왜 평의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평의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선고하기 전에 새어나 가지고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예방하는 게 제일 주목적이야. 미리 예고했더라도 그대로 나가면 뭐 미리 알아가지고 큰일 될 게 뭐 있냐 말이야. 누가 알아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데 도망간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성공한 내란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 있냐?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우리가 잘못하고 저희 변명한다 그럴 테니까. 일본엔 말이죠. 중요한 이슈가 최고재판소에서 문제가 되면 한 두 달 전부터 그냥 신문이고 뭐고 나는 거야. 결론이 이렇게 난다, 몇 대 몇으로 난다 말이야.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미리 흘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평의 비밀이 섰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데 (연루된 사람의) 별이 200개라고 그랬어요. 별이 200개라 그러는데 이게 위헌으로 결정났다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냥 넘겨보낼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 둘이 뜻이 완전히 합치돼서 법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진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게 되면 진짜 곤란하겠더라고. 내가 합헌이라고 했다가 역사적으로 잘된 것이라고 평가받으면 별 문제

가 아닌데 잘못되었다고 평가받으면 40년 판사 생활 막판에 무슨 것이냐고. 내 그만 두고 말든지 그런 게 낫지.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두고 보자, 이랬는데 마지막으로 평의한 결과가 네 사람이 합헌이라고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위헌이라고 그랬지만 네 사람이 합헌이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던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것 하면서 내 회갑기념 논문집인가에 김철수 교수가 쓴 게 있어. 헌법재판소 김용준 2기 재판부가 어찌구저찌구 그렇게 쓰고 나서, 결국 김용준 소장이 위헌이라고 그러는 게 이론에 맞는 것이고 잘된 것이다, 이랬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좀 좋은데 그래서 처벌하게 되었죠. 묘하게 의견이 갈려서 겨우 2 대 3 대 4인가, 두 사람은 공소시효가 정지 안 된다고 본 거야. 내란죄, 외환죄 이외의 죄도 재직 중에도 기소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김문희하고 황도연 재판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려서 했는데. 이게 그때 얘기야. 그때 얘긴데. “중앙일보”에 강위석이라고 논설고문이 ‘헌재가 한국 살렸네’라고 썼어. 여기 보면 이론적으로는 다섯 사람이 위헌이라 했는데 그 이론이 맞는다, 네 사람이 합헌이라 그런 바람에 합헌 결정이 나서 한국이 소용돌이치는 데서 빠져나와서 한국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역사에 남을 결정이라고 봅니다.

면담자: 그런데 소장님께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때 그 사건은 사실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

구술자: 과거사 정리를 역사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또 윤리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별 문제로 하고 과거사라도 말이야.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법률에 맞게, 법리에 맞게 해야지. 그때 말이야. 어느 연구관은 이러더라고. 나치는 왜 처벌을 하나? 소급해서 말이야. 내가 이랬어. 전두환, 노태우를 어떻게 나치에다 비유하냐, 아무리 강압선거라고 하지만 선거를 하고 말이야. 두 사람이 십 몇 년을 하고 말이야. 다 국민 90%가 좋다 하고. 국민투표하고 그래놓고 나치에다 비교하냐.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할까? 법적 안정성,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같은 사람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성도 정의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나는 지금도 소급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 내가 오늘 간통을 했는데 내일 법률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간통범으로 처벌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지나간 것을, 지금 법으로 소급해서 법, 그게 아주 헌법에 있어요. ‘형법불소급의 원칙’. 이게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처벌할 수 없게 된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로이다...

면담자: 정치적 이슈가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위한 결정하셨거든요.

구술자: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게 틀림없잖습니까? 편차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당시 우리가 4 대 1이라 그랬단 말이야. 4 대 1이라는 것은 제일 많은 선거구 하고 제일 적은 선거구가 4배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해운대 선거구가 40만 명인데 제일 적은 선거구가 9만 명이다. 9만 명(선거구)도 국회의원 하나, 40만 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만 명이 하나면 적은 선거구는 10만 명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종당은 3배, 2배로 가야 된다, 2배 이하로는 안 돼요. 2배 이하로는 똑같아야 하니까. 지금 2배로 가는데 2배로 가는 게 뭐냐면 어디가 20만 명이라 하면 10만 명 미만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20만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3 대 1로 할 거냐, 4 대 1로 할 거냐 그래서 3 대 1로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4 대 1로 해도 몇 개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정치권하고도 문제이니깐 우리가 운을 띄우면 몇 년 안에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3 대 1 되었나?

면담자: 2001년에 3 대 1로 되었고요.

구술자: 2001년에?

면담자: 2001년에. 1995년도에 4 대 1로 위헌하셨고 2001년도에 3 대 1로 위헌했습니다.

구술자: 그러다가 2 대 1이 되었지.

면담자: 그러다가 2014년에, 13년쯤 지났습니다.

구술자: 이제는 끝났어요.

면담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사실 2 대 1은 좀 무리한, 반대 의견이 좀 있었습니
다.

구술자: 그 다음에, 또?

면담자: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검열금지의 원칙'...

구술자: 검열은 아까 얘기했지만, 검열제도는 헌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던 말이야. 사전검열은 안 된다. 헌법 몇 조에 있던가? 21조?

면담자: 21조 2항입니다.

구술자: 뭐라 그랬지?

면담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구술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화를 검열하는 제도가 사전검열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가 되었던 말이야. 사전검열이라 그러면 위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헌법 조문에 정면으로... 그래서 위헌으로 판결한 거야.

면담자: 그 당시는 사실은 모든 예술이나 문화, 예술작품들을 실제로 행정부가 검열을 해 왔었거든요. 사전심의회의 이름으로. 1995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고 나서 완전히 영화계가 판도가 바뀝니다.

구술자: 많이 바뀌었어요?

면담자: 예, 그 전에는 전부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화 표현을 해 낼 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구술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실제로 당시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반대했습니다. 검열 위헌 결정 내시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 사설에 헌법재판소가 음란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렇게. 음란의 자유를 허용했다... 검열이 없어지면 음란물이 막 시중에 바로 나갈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음란의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비판을 했다랬어요.

구술자: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불가피한 거야. 불가피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고. 헌법상의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영화학회인가 회장이야. 그 무렵에 와서 잘했다고 그래서 ‘야 이름만 잘했다고 하지 말고 나 표창장이나 하나 주든지’라고 농담했더니 진짜로 상패를 가져왔다고. 외국 영화 중에서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작품이 뭐지 비디오 가져와라, 생각이 났어. 외국 것은 ‘케인 시민’(시민 케인, Citizen Kane, 1941), ‘케인 시민의 자유’인가 그게 있고, 국산 영화는 ‘서편제’야. 갖다 봤는데 어디다 갖다 봤는지 표창패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비디오 음반에 대하여 연달아 나왔지. 어차피 위헌이라고 안 그래도 범람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사회 분위기가...

면담자: 그런데 그 결정은 상당히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구술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면담자: 욕을 먹었어도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대단한 결정...

구술자: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2기 재판소가 잘한 것 중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야.

면담자: 실제 영화계에서나 문화, 예술계에서는 대단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소장님, 사형제도에 관해서...

구술자: 사형제도에 대해 내가 쓰려고 자료를 이렇게 모았어요. (사형수가) 몇 십 명이 있는데, 자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찬반양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토론회 하는 데서 너희 마누라 하고 자식을 죽였는데 사형하는 거 반대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반대라고 그랬다고.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급전직하로 여론이 나빠져서 대통령 떨어졌어.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났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새 시류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관사할 때 흔히 있던 일인데 무장 간첩이 내려와서 양민을 수십 명 학살했다? 그거 사형시키면 안 되나? 또 옛날에 우 순경, 그런

것처럼 사람 수십 명 죽었다? 사형시키면 안 되나? 나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사형제도가 잘못하면 위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막상 결정할 무렵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위헌 결정이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무슨 미국하고 일본이 (사형제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보다 그렇게 휴머니스트한 나라입니까? 유럽은 말이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례지만 유럽은 보고 배울 게 있고 안 배울 게 있어요. 유럽은 난장판이야. 밤낮 싸웠잖아요. 유럽 역사를 보면 밤낮 싸운 역사야, 전쟁... 이 놈이 이 놈하고 싸우고 이 놈이 이 놈하고 싸우고 말이야. 저희끼리 죽이고 말이지. 주인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놈하고 이 놈하고 싸워서 이 놈을 죽여. 그 다음에 이 놈하고 이 놈하고 합쳐서 이 놈을 죽이고 말이야. 발칸 반도 같으면 밤낮 그 짓 한 거야.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래. 독일, 프랑스도 밤낮 한쪽은 프랑스 역사(영토)였다가 독일 영토였다가 그런 거지 뭐.

면담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관해서... 이게, 사건 중에 한정위헌 결정과 그 다음에 재판소원 금지 사건에 대한 재판 취소까지 하셨고...

구술자: 그것은 말예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는데 한정위헌 결정을 가지고 자꾸 대법원에서 시비를 하는데 나는 시비를 위한 시비라고 생각해. 그러면 전부 위헌이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나? 그러면 합헌적인 법률까지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떼어서 위헌이라 그러는데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고 자꾸 그래. 그건 자기들 강변이고. 위헌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 주면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취소하고 그러는 것, 사실은 헌정사, 헌법재판소 역사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대법원 판결 취소한 게. 그건 정말 우리 때 하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하고 배치되는 재판을 한다? 그것을 용납하는 건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무슨 위헌결정의 지속력 이런 것을 떠나서 그때 합의할 때 그러더라고. 딴 건 다 그만두더라도 헌법재판소 제도를 둔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거다. 헌법의 기본 정신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결정을 위헌이 아니라고 재판을 하면 현재 없애자는 얘기 아니야.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말이야. 결정에, 그렇게는 안 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4. 소회 및 제언

면담자: 소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소장 잔여 임기를...

구술자: 이게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렇게 돼.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법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 아마 그런 취지로 했을지도 몰라,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종전에 나하고 윤영철 소장이, 3대까지는 대법관 하다가 퇴임한 사람을 그냥 임명했어. 임명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헌법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재판소장이 되었으니까 없었는데. 4대 때부터가, 4대가? 4대? 5대에서부터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이 되었단 말이야.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니까 재판소장의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소장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지 그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박한철이라고 이전 소장이 한 4년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소장은 1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을 하면 계속해서 1년짜리, 2년짜리가 생기게 되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때부터 6년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여야 간의 협의를 해서, 재판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석 하자고 관행으로 해도 되는 거야.

면담자: 소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후배 헌법재판관이나 소장님 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구술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원이 생기고 나서 청렴도는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 지켜졌고, 또 웬만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 가도 그보다 더 청렴하기, 꼭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사람 중에 나쁜 놈도 있으니까. 그런데 청렴도도 웬만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법권 독립이란 말이야. 그게 독재의 역사가 길었으니까 사법권 독립이 꼭 정치권력으로부터가 아니고 사회 세력 이런 것으로부터. 항상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던 말이야. 여태까지 웬만큼 지켜졌어요. 지켜졌는데 근

래에 와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사법권 독립이 뭔가를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해. 그래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사법권 독립이 지켜진다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하고 만났다는지 연결된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로 안 돼. 만나자 하더라도 만나지 말아야 해. 만날 필요가 뭐 있냐. 필요 없다. 옛날에 워렌(Earl Warren)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법원장을 했던 말이에요. 무슨 파티에 갔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슨 사건 얘기를 했대요.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건에 관심을 표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워렌이 대통령 나오는 행사장에 안 가는 거야. 안 가고 그런 외국 행사, 워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몇 번 했어요. 외국 대사관이 파티를 주최한 다든지 할 때만 가는데 그때도 꼭 시작하기 전에 가서 인사하고 시작하기 10분 전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나 무슨 행정부 쪽 사람, 정치인하고 접촉하는 외관을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하는 거야.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라는 게 있어요. 베니스위원회가 될 하나면 말이죠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의 부속기관 비슷하게 되어 있어. 이태리 사람들이 만든 거야. 베니스에다가 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각국의 헌법재판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하나 무서운 게, 가서 회의하는 데 보니까 어느 나라든가, 우크라이나든가 어느 나라가 헌법 초안이 작년에 회의에 부의(附議)되었는데 회의에서 리젝트(reject, 불합격)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왔는데 통과시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베니스위원회가 뭘데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그랬더니 이유(EU,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헌법이 베니스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야 한대. 베니스위원회에서 ‘너희 헌법은 민주주의적인 헌법이 아니다’ 그러면 EU에 가입을 못 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란 말예요. 거기서 오브젝트(반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입이 되었다. 일본은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든가. 일본 부영사가 사무실은 거기 있지만 베니스위원회 담당 부영사가 나와 있어. 우리나라는 상근 나온 사람이 없는데, 가서 그 이듬해 뭐야, 옵서버로 참가하고 했던 말이야. 그런데 베니스위원회에 내가 가서 연설하고 그래서 회원국으로 가입해서 지금 계속 간다.

면담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 2기 재판부 시절 주요 결정과 사건

면담자: 이번 구술은 제2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내신 김용준 전 소장님에 대한 제2차 구술입니다. 지금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3시,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법무법

인 넥서스 고문변호사실입니다. 면담자는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1차 구술을 하시고 또 2차 구술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예.

면담자: 먼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기 재판소 시절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결정이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구술자: 글썄요. 뭐 보람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련 법률, 속칭 과외 금지하는 법률을 위한 결정한 건데... 왜 그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많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교육 문제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중에서도 입학시험 문제인데, 과외 금지하는 법률을 위한 결정함으로써 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 제도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 결정에 대해 66%가 공감한다고 했고 3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만 공감은 하지만 앞으로 과외 수업이 또 극성을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에 관해서는 81%가 우려된다고 했어요. 지금 과외가 극성맞은 게 꼭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의 서울대학교의 교육학 교수가 시론을 썼는데 거기에도 과외가 범죄는 아니라고 하고는 과외 전면 금지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옳았다고 했어요. 우선 첫째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교육시킬 권리, 그리고 학생이 공부해야 될 권리, 또 국가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권한이자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제한한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대법원에 가니까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았는데 어떤 경찰관이 자기 애를 과외를 시켰다고 해서 해임을 당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몇 년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말이야, 애 과외 시켰다고 해서 아버지가 경찰관에서 해임까지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마침 과외를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들을 했는데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입학시험에 관여하는 대학 교수나 입학시험 준비하고 지도하는 고등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은 과외 수업을 못 한다, 그걸 금지할 수 있게 길을 터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지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제일 보람

이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 나는 이거 우리나라 법조사라고 그럴까, 법원사에서는 아주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거야. 취소한 건데, 대강 내용을 아세요?

면담자: 예. 예.

구술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기준 시가에 의해서 물리게 돼 있던 말이야. 기준 시가에 의해서 물리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로 하면 하나도 남을 게 없는데 기준 시가로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격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로 유리하게 해 줘라, 이랬던 말이야. 이랬는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실제 거래가로 하는 게 아주 불리한 거야. 세금을 더 내게 생긴 거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무리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국민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사람만 특별히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랬던 말이야. 대법원에서 내세운 건 명분은 서요. 이 사람이 실제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왜 실질적으로 과세를 무는 건 안 되겠느냐, 그게 싸움이에요. 또 얼른 들으면 대법원 말이 그럴싸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기준시가 가지고 내게 돼 있는데 왜 이 사람만 실질거래가로 내게 하나, 그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다, 이런 거란 말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정위헌 결정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논란을) 계속하는 거죠.

면담자: 다루기가 힘들었던 사건 중에 가장 다루기가 힘들었던...

구술자: 그거야. 5.18, 12.12지. 12.12가 처음 왔는데 내란죄는 시효에 걸렸다, 그때 그랬던 말이야. 시효에 걸렸다... 그리고 반란죄만 남았는데 반란죄는 기소유예했어요. 기소유예가 법리적으로만 좀 따지면 안 맞는데 그렇다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일했는데 지금 와서 반란죄로 기소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 체면도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덮어 두자 이랬던 말이야. 그런데 세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둘인가 셋이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일단 끝이 났는데, 그 12.12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5.18사건에 관해서 또 왔던 말이야. 12.12 사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990년, 아니...

면담자: 1995년 사건입니다.

구술자: 응? 언제였지?

면담자: 1995년 1월 20일.

구술자: 응. 저거 5.18(불기소). 이거는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야. 이걸 좀 애깃거리가 있는 거야. 내란을 일으켜서 사람 다 죽인 다음에 성공했다고 처벌 못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이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 암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을 해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사실상 처벌 못 하는 것은 모르지만 처벌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왔지만 그때 이걸 청구한 것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주로 그 당시 야권이죠. 김대중 아니면 김영삼 쪽 사람들이야. 해 놓고는 막판에 가서 무슨 공작을 했는지 취하했던 말이야. 취하하니까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실컷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려는데 취하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건 독일의 학설 같은 게 있어.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청구한 사람의 권리 구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걸 선언하는 의미에서도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선고하자, 이런 설이 재판관 중에 나왔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다섯 사람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사람이 뭐 뽀뽀 우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럼... 그래서 내가 묘안을 내기를, 그러면 취하했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됐다, 소송 종료 선언(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하자, 소송 종료 선언을 하되 네 사람은 종료 안 됐고 우리가 5.18 이거 내란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고 소수의견을 밝히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안을 냈어요. 내가 낸 안을 아홉 사람이 다 좋다고 해서 이 사건은 취하하는 의미에서 사건이 종료됐다, 그리고 네 사람이 소수 의견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결정을 했는데 취하해서 선고를 못했으니까 이 뜻을 밝힌다, 이랬던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다, 이렇게 되었던 말이에요.

면담자: 소장님, 이걸로 일단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용준 전 소장님의 2차 구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감사합니다.